

# 강·절도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김재경, 이선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Jae Kyeong Kim(wingbeat18@hanmail.net), Sun Beom Lee(lsb9641@naver.com)

### 요약

이 연구는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 현상은 강·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 중심어 : | 강도 | 절도 | 공범 | 근거이론 | 범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o this end, interview data for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3(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 Burglary and Robbery in Korea) were used as secondary data. Using secondary data, we attempt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Based on the procedure presented by Strauss&Corbin (1990), the open coding stage was derived from 51 concepts, 22 subcategories and 8 upper categories. According to an analysis tool called "coding paradigm," the causal condition is the cause of the robbery and burglary crime. Contextual conditions are the formation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nd the reason for selecting co-offending.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Interventing conditions are conflict between co-offenders and occurrence of arrest factor.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is arrested all co-offenders. The consequence consisted of ending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Finally, the selective coding stage selected 'the development of conflict between formation and end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s the core category, and newly established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hrough the process of 'formation-implementation-conflict-arrest-end'.

■ keyword : | Robbery | Burglary | Co-offending | Grounded Theory | Crime |

## I. 서론

우리나라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강·절도는 살인 및 폭력과 더불어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생치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다.

강도와 절도는 공범검거의 비율이 높은 범죄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1], 공범이 있을 경우,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할 때보다, 공범으로 인해 그 범행성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증폭되며[2-4], 폭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 이러한 강·절도의 특성과 더불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강·절도 관련 공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형사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공범관련 연구는 청소년비행 분야에서 시작되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 그룹범죄는 성인보다는 청소년비행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범죄경력을 쌓기 위한 필수적인 탐색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6].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도록 조기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공범관련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근거이론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기존 집단이나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방법이다. 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도출하며, 다른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 및 조직의 사회적·심리적·구조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27]. 현재 공범관련 실증연구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범관련 실증연구는 대부분 공범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연령[1][6-10], 성별[4][5][7], 집단의 특성[1][4][9][11][12]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범관계를 밝히거나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공범이 형성되어 범행을 실행하

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다면, 형사정책수립 시 좀 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공범이 형성되어 범행 실행 후 관계까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범범죄의 질적 접근을 통하여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범의 개념

공범(共犯, 독일어: teilnehmer, 영어: accomplice)은 일반적으로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협력, 가공하여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28]. 우리나라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30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교사범(31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중범(32조) 및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간접정범(34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광의의 공범이라고 한다.

흔히 정범은 범죄를 지배한 자이고, 공범은 지배하지 않는 자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범행에 등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범이다. 그리고 교사범이나 중범은 공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공범은 바로 교사범과 중범만을 뜻한다[13]. 즉, 공동정범·교사범·중범의 3가지 공범 중 교사범과 중범은 교사·방조되는 자만이 범죄를 실행하고 교사·방조하는 자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을 공동정범과 구별하여 협의(狹義)의 공범이라고 한다는 것이다[29]. 보다 구체적으로, 공범이란 협의로는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고, 보다 광의로는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criminal cooperation)을 말한다. 그리고 이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은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여 범죄를 지지하는 것이다[9]. 연결망(network) 내에 속해있다 하여도 공범자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결망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14].

## 2. 공범에 대한 이론

공범에 대한 이론은 이민식(2007)과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Weerman(2003)이 제시한 4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eerman(2003)은 공범에 대해서 범죄학적 이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① 집단영향이론(group influence perspective)은 범죄행위로서 공범을 집단 내 과정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이나 일탈적 정의의 습득(acquisition of delinquent definitions), 집단 내 구성원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범에 가담한 사람들은 소속된 집단에서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단 행위를 통해 구성원들은 사회적 보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공범에 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구성원으로부터의 비난에서부터 집단의 퇴출까지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15]. 즉, 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보상 혹은 제재의 두려움으로 인해 공범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사회적 선택이론(social selection perspective)은 집단 영향을 거부하는 범죄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다. 그들은 범죄가 발생하거나 비행집단이 형성되는 것은 범죄자들이 서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범죄자들이 서로를 선택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공범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의 결과라고 본다(예를 들면, 자기통제의 결핍)[15].

③ 도구적 이론(instrumental perspective)에서는 공범범죄를 범행을 좀 더 쉽게, 수익성이 높게 해주고 체포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도구적 관점에서 공범범죄는 일반적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범죄를 함께하는 것은 의사

결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은 공범범죄의 이익이 잠재적으로 크다는 확신이다[15]. 도구적 이론에서는 공범범행의 장점 및 이익이 잠재적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즉 단독범행에 비해 범행이 용이하고 이득도 더 많다고 판단될 때 범죄자들은 공범범행을 선택한다고 본다[1]. 그러나 공범범죄로 얻은 이윤은 분배를 해야만 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공범범죄자들은 스스로 모든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15].

Weerman(2003)은 집단영향이론(group influence perspective), 사회적 선택이론(social selection perspective), 도구적 이론(instrumental perspective)을 검토해본 결과, 공범범행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3가지 이론 모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고찰을 위한 이론으로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제시하였다[15].

④ 사회적 교환이론 주장자인 Homans(1954)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로 그의 이론은 개인 간 내면의 심리적 교환하는데 타인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준만큼 되돌려 받으려 하며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면의 심리적 교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Blau(1964)는 사회적 교환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경우 감사의 마음, 신뢰 등과 같이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16].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신뢰와 상호 호혜적(reciprocal)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이해하는데 가장 주된 명제라고 볼 수 있다[17]. 공범에 대한 사회적 공범에 대한 사회적 교환이론의 가장 중요한 관념은 공범행위가 재산(goods)을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재산'은 포획물이나 보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승인(acceptance)과 수용(approval)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9]. 공범의 교환되는 재산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서비스(services: 범행을 실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 둘째, 포획물(catch: 피해자로부터 얻은 돈이나 물건의 분배), 셋째, 보수(payment: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돈이나 물건), 넷째, 인정(appreciation: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 다섯째, 수용(acceptance: 구성원

으로서 사회적 보상), 여섯째, 정보(information: 사람이나 문제에 대한 지식의 제공)이다[15]. 사회적 교환이론에서는 단독범행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범범행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단지 재산상의 이득 혹은 물건과 같은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공범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

### 3. 연구경향

공범범죄에 관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중 가장 많이 제시한 결과는 연령과 공범범죄의 상관관계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공범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6-8]. Reiss and Farrington(1991)은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공범범죄의 발생에 변화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공범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범범죄보다는 단독범행으로 전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4]. 이러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범이 있는 범죄를 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박지선·김지영(2018)의 연구에서는 공범집단을 1명 그룹(LPR, lone-perpetrator robberies), 2명 그룹(DPR, double-perpetrator robberies), 3명 혹은 그 이상 그룹(GPR, group of three or more perpetrator robberies)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명 혹은 그 이상의 그룹으로 강도를 저지른 그룹의 평균나이가 19.69세로 2명이 강도 범죄를 저지른 그룹 27.92세, 1명이 강도 범죄를 저지른 그룹 33.25세보다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유사한 연구로 공범집단을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4][5].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도 공범집단을 평균연령을 10대의 청소년 집단과 20대 성인 그리고 30대 이상 성인집단으로 구별하여 연령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범집단의 연령대에 따른 구성원의 나이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 구성원의 연령 동질성은 10대 공범집단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었고, 20대와 30대 공범집단의 연령 동

질성은 1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

두 번째, 공범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과 더불어 성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van Mastrigt and Farrington(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그룹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7]. 더불어 공범을 선택할 경우 이성보다는 동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상황은 남성 범죄자가 더 크다는 것이다[4][5]. 즉, 남성이 여성을 공범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을 공범으로 선택하는 경우보다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146개 공범집단 가운데 116개(79.5%)는 단성 공범집단이었으며, 30개(20.5%)는 혼성 집단으로 나타났다. 단성 공범집단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공범집단은 없었다[1]. 이밖에 성별과 관련한 연구로 Koons-Witt and Schram(2006)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가족, 지인, 낯선 사람으로 나누고, 특히 여성 가해자에 의한 강도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여성 가해자가 남성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73.1%로, 여성 가해자 혼자 저지르거나(24.1%) 여성 두 명이 저지르는 경우(2.7%)보다 훨씬 더 많았다[18]. 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성 가해자가 남성 공범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52.9%로 낮아진 반면, 여성 가해자 혼자인 경우(39.9%) 및 여성 두 명이 저지른 경우(7.3%)가 상대적으로 많았다[19].

셋째,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동질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앞서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성별 변수에서도 동성을 선호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1]. 더불어 성별, 연령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및 유사한 범죄경험이 있는 공범과 접촉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4][5][14][15]. 이민식(2007)의 연구에서도 공범들 간의 관계가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범들 간의 관계는 사회친구나 선후배(36.1%), 고향친구나 선후배(19%), 학교친구나 선후배(6.3%), 직장동료(4.5%), 교

도소에서 만난 사이(2%)와 같이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9].

넷째, 공범집단의 크기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공범그룹의 크기는 2~4명 정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12][13].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식(2007)의 연구에서 공범수가 3~6명인 경우가 전체 약 9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9].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도 공범집단이 대부분 2~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한 바 있다[1]. 이와 같이 공범그룹을 형성함에 있어서 대규모의 그룹보다는 소규모의 그룹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지선·최낙범(2010)의 연구에서는 강도 범죄자의 범행 수법을 크게 두 가지의 범죄유형(계획형, 기회형)으로 분류하였다. 계획형 강도 범죄자들은 범행 시작 전 범행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범행 전 범행 절차나 도주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하는 등 고도의 치밀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단독범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도 있으나 2인 이상 다른 공범과 함께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20].

마지막으로 공범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McCarthy, Hagan and Cohen(1998)의 연구에서는 Coleman(1990)의 연구에서 제안한 타인과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모형을 바탕으로 공범의 유형을 ① 개인주의적 유형(individualistic) ② 채용적 유형(recruiting) ③ 고용적 유형(enlisting) ④ 협력적 유형(collaborative)으로 제안하였다[21].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민식(2007)의 연구에서는 공범관계에 대해서 ① 명령·우세 ② 복종·열세 ③ 대등한 관계로 구분 짓고 있다. 이와 같이 공범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대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관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공범이 형성하여 첫 범행을 한 이후 같은 공범과 범행을 할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4][11][12]. 하지만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는 공범집단이 한 건의 범행을 같이하는 범행지속성이 매우 약한 특성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1]. 이민식(2007)의 연구에서도 역시 공범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반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70.7%으로 일회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와 같이 공범범죄 관련 연구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질적 접근 방법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의 연속적인 의미를 지닌 연구로서 양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접근 방식으로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검토 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는 공범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공범을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본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22]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0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부산, 전주, 춘천, 천안 4개 지역의 각 교도소에서 강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공범 재소자 총 15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교도관의 입회 아래 교도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1회 1시간~1시간 30분가량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초기에는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참여자들의 현재 교도소 생활, 출소 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였고, 심층면접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①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② 현재 수감된 사건의 죄명 및 범행 내용(공범 수, 범행 가담 경위 및 공모경위, 범행 계기 및 이유, 역할분담, 이익분배, 검거 경위 및 순서, 그 외 공범범행 경험 등), ③ 공범과의 관계(범행 당

시 공범과의 관계, 공범과의 상호작용, 갈등 사항, 범행 후 공범과의 관계 변화 등), ④ 강·절도 범죄관련 사항(수법, 사용도구, 범행대상 및 장소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였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죄명	공범 수	관계
1	남	40	무직	특가범(절도)	총 3명	교도소 동기
2	남	35	무직	특가범(절도)	총 5명	교도소 동기
3	남	41	무직	강도살해	총 3명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
4	남	32	무직	강도치사	총 3명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
5	남	21	일용직	특수절도	총 4명	사회에서 만난 친구
6	남	34	일용직	특수절도	총 2명	군대 동기
7	남	34	일용직	특수절도	총 2명	군대 동기
8	남	30	일용직	특가범(절도)	총 5명	직속 선후배
9	남	28	일용직	강도상해	총 2명	교도소 동기
10	남	21	무직	특가범(절도)	총 10명	동네 선후배
11	남	27	일용직	특수절도	총 2명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이
12	남	61	무직	특수강도	총 5명	교도소 동기
13	남	56	무직	특수강도	총 4명	교도소 동기
14	남	64	무속인	절도	총 9명	그냥 알게 된 사이
15	남	29	무직	특수절도	총 2명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이

응답자는 총 15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졌고, 연령은 21세부터 64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범행당시의 직업은 무직 8명, 일용직 노동자 6명, 무속인 1명으로 무직 상태가 가장 많았으며, 죄명은 절도 1명, 특수절도 5명, 특가범(절도) 4명, 특수강도 2명, 강도상해 1명, 강도치사 1명, 강도 살인이 1명이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로써, 이들의 공범 수는 면접자를 포함하여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다양했고, 각 공범자들의 관계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가 5명, 동네 및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가 3명,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이가 2명, 군대후련소 동기가 2명,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이가 2

명, 그냥 아는 사이가 1명으로 나타났다.

## 2. 근거이론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대표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Strauss&Cobin(1990)에 의해 고안되어 체계화된 사회학 이론으로서,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방법으로 많은 개인들이 관여하는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분석적 실체 이론이 나타나는 방법론이다. 특히 사회전체 또는 대규모 집단에 적용되는 이론보다는 제한된 세계 안에서 동질적 특성을 지닌 특정 집단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23]. 또한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문제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이 부적절하거나 한계를 보일 때 이용되기도 한다[24].

이러한 근거이론은 3단계의 코딩과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은 근거이론의 기초단계로 개별화된 자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그룹화 하여 범주(categories)를 형성한 후 각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으로 이렇게 범주화된 개념들은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활용된다[25].

둘째,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하위범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위범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으로서, 최종 도출된 상위범주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된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을 활용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열한다. 이러한 축코딩의 목적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 분리되었던 각각의 개념들을 재조합하여, 일관된 분석을 가능토록 하는데 있다[25].

셋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범주는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구체화 시키고, 개방코딩 및 축 코딩을 통해 발견한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정교화 시킴으로서 하나의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이다[25].

표 2.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오랜 기간 반복된 수감생활 경험으로 인해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출소 후 사회부적응	강 절도 범행 원인
부모형제와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출소 후에도 의지할 곳 없음		
일정한 수입 및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생활비 부족	금전적 필요성 인식	
카드계입으로 큰돈을 잃게 되자 돈 필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려했으나 생활고에 부딪힘	경험적 작용	공범관계 형성
많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		
과거 공범범죄를 통해 쉽게 금전을 취득했던 경험을 상기시킴	심리적 작용	
쉽게 발각되지 않자 습관적으로 범행		
금전적 어려운 현실의 전환을 위한 한탕주의 욕구 발생	제안/설득	공범관계 형성
교도소 수감 중 절도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풍문을 듣고		
공사현장 자재 수거 및 판매하는 일 제안		
본인이 가진 자판기 기술을 선보이며, 범행 제안 및 설득		
도박장에서 만난 동생에게 범행 제안 받음	협력관계	공범선택 이유
제안을 받고 수동적으로 처음 따라갔다가 지속적으로 범행		
교도소 내에서 이미 범행을 공동 모의함	범행 수익성	
출소 후 교도소 동기들과 자연스레 공범관계 형성		
함께 생활하다가 자연스레 범행 모의함으로써 공범관계 형성	공범의 편의성 추구	공범선택 이유
단독범행보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		
단독범행보다 안전하다는 인식		
범행 장소에 따라 전문적 업무분담 용이하다는 인식		
본인의 검거위험을 낮추고, 검거 시 탈출구 마련을 위함	범행계획	강 절도 공범실행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산층 가구 검색		
통상적으로 중산층 가구가 밀집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선택		
평소 범행대상물이 있다고 눈여겨보았던 장소 선택		
자신의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장소 어디든	범행 주도성	
주도적, 보조적, 공동적으로 구분		
역할분담 없음	역할분담	공범 간 갈등
망보는 사람과 범행 장소에 직접 침입하는 사람으로 구분		
범행 장소에서 거주자 수에 따라 분담	범행관련 갈등	
범행관련 기술을 전수했음에도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을 어김		
범행을 배우는 단계의 공범이 수익을 더 요구해서 다툼	수익관련 갈등	
범행 수익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않아 다툼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를 어겨 다툼	공범일원의 우선 검거	검거요인 발생
일부 공범이 범행 이후 부주의한 행동으로 검거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공범 중 일원이 해당 범행사건까지 진술하여 나머지 공범까지 검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고		
공범 범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신고	차량이용	
공범이 단체로 움직이기 위해 차량 이용		
취득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차량 이용	범행 후 취득물품 조치	공범모두 검거
취득 물건 고물상에 처분		
취득 물건 장물아비에게 팔아넘김	방법장비 포착	
CCTV, 범행 장소 인근 방범카메라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렌트한 사람의 전화번호 추적	경찰추적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및 렌트한 차량번호 추적		
핸드폰 위치 및 사용 컴퓨터의 IP 추적		
장물 추적	검거	공범관계 종료
나머지 공범 모두 검거		
공범 가담에 대한 후회	후회	
공범과 범죄를 지속한 것에 대한 후회		
검거 후 자기 교도소 수감생활로 공범관계 해소	관계 해소	
출소 후 공범과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을 예정		

따라서 이 연구는 Strauss&Co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코딩과정을 거쳐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V. 연구 결과

#####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특정 현상에 명칭을 붙이고, 이를 개념화하는 단계를 거쳐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어 카테고리리를 형성, 즉 범주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범주,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 2. 축코딩 및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로서, Strauss&Cobin(1990)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이

라는 분석적 도구를 통하여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 한다[26]. 이러한 축코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8개의 상위범주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여 상호관련성 및 관계를 파악하였다[그림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떠한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인이나 조건을 말한다. ‘강·절도 공범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출소 후 사회 부적응, 금전적 필요성 인식, 경험적 작용, 심리적 작용 등 4가지 요인이 ‘강·절도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phenomenon)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중심현상이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공범들 간 범행계획, 범행 주도성, 역할분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강·절도 공범실행’이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context condition)은 어떠한 특정 현상에 문제를 만들어 내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말하는데, 여기서 ‘강·절도 공범실행’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제안 및 설득,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범관계 형성’과 범행 수익성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공범 선택 이유’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조장, 제한함으로써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 중재적 조건을 통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강·절도 공범 실행 이후 공범 모두가 검거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즉, 중재적 조건은 범행 관련 갈등 및 범행 수익관련 갈등으로 인한 ‘공범 간 갈등’과 공범 일원의 우선 검거, 신고, 공범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이용, 범행 후 취득물품의 조치, cctv 등과 같은 방범카메라 포착으로 인한 ‘검거요인 발생’임을 알 수 있었다. 작용/상호작용전략(strategics)은 중심현상에 대한 결과이며, 구체적으로는 중심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략이다. 강·절도 공범실행에 따른 결과 및 대처 전략은 경찰추적과 검거를 통해 ‘공범 모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s)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연구에서는 공범 모두가 검거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공범관계 종료’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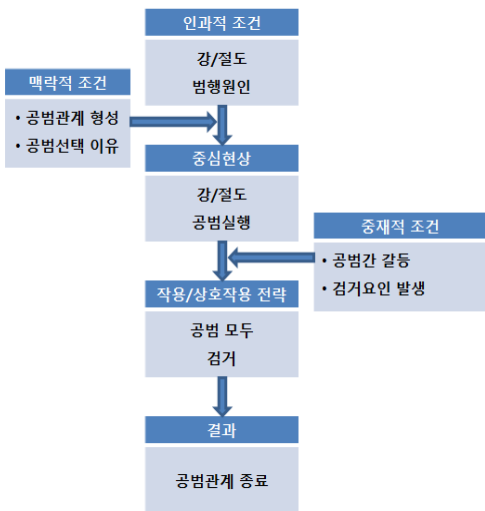


그림 1.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 패러다임 모형



### 3. 선택코딩 및 핵심범주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론을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강·절도 공범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선택코딩의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강·절도 공범들의 공범관계를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의 순서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공범관계 형성과정에서는 weerman(2003)이 제시한 공범이론을 적용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 3.1 공범관계 형성

weerman(2003)이 제시한 사회적 선택이론(social selection perspective)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의 습성과 자기 통제력의 부재 등 개인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됨으로써, 범행의 기회가 있으면 함께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15]. 이 연구에서 나타난 공범관계의 구조적 형성과정은 weerman(2003)이 제시한 사회적 선택이론과 마찬가지로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범을 제안하거나 요구 받음으로써 공범의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협력관계의 공범으로 전환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도구적 이론(instrumental perspective)은 범죄자들이 범행의 용이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단독범행보다는 공범범행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범을 선택한다고 하였는데[15], 이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공범이 단독범보다 안전하고, 업무 분담 측면에서도 용이하며, 수익 또한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공범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맥락적 조건에서 제시한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를 통합하면 weerman(2003)이 제시한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까지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3.2 공범실행

공범관계를 형성한 범죄자들은 공범범죄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하였다.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

트를 검색하거나 통상적으로 중산층의 가구가 밀집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지역구, 평소 눈여겨 봐 두었던 주거지역 등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시에는 밖에서 망을 보는 사람과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또는 역할 분담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범행 시 공범들 간 주도적 역할, 보조적 역할, 공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 3.3 공범 간 갈등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밝힌 공범 간 갈등 상황으로는 범행관련 갈등, 수익관련 갈등, 검거관련 갈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중에서도 공범관계가 해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갈등 요인으로는 ‘검거관련 갈등(1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거와 관련된 공범 간 갈등은 개방코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공범이 범행 이후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상 개인 아이디 사용 등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검거 되었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검거된 공범 중 일원이 해당 범행 사건까지 진술함으로써 나머지 공범 모두가 검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 3.4 공범모두 검거와 관계 종료

경찰은 공범 일원 중 우선 검거된 공범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범행 증거를 뒷받침하고, 나머지 공범을 모두 검거하기 위하여 공범들이 이용한 차량번호, 핸드폰 위치, 컴퓨터 IP, 장물 등을 추적하였고, 결국 모든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공범들이 모두 검거됨으로써, 이들의 공범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면접 자료에 나타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범에 가담한 것과 공범관계를 지속한 것을 후회하였고, 출소 후에도 기존 공범들과 연락을 끊고 살겠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수감된 계소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공범관계 종료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작용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과정을 전반적으

로 살펴보면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강·절도 공범 범죄자들의 경험적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절도 범행원인,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 중심현상은 강·절도 공범실행,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관계’라는 중심현상으로 핵심범주를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공범들은 범행 전 생활비 마련 등과 같은 금전적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범행을 이미 염두 해 두고 있었지만, 범행의 용이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단독범행보다는 공범범행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변사람들에게 공범범행을 제안하는가 하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서로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범관계가 형성되었다. 공범관계를 형성한 범죄자들은 범행 장소 선정 및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강·절도 범행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조롭게 진행 되지 않았다. 범행 관련, 수익분배 관련, 검거 관련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검거관련 갈등’은 공범들의 관계가 종료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공범 중 일원이 범행 이후 부주의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경찰에 검거된 후, 관련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진술함으로써, 나머지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들의 공범관계는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공범들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범행당시 직업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으로써, 금전적 필요성이 가장 시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범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수익성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다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범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은 주로 교도소 동기,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 동네 선후배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자신과 유사한 환경의 주변인들과 함께 공범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적 속성은 추후 이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또 다시 공범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공범범죄자들의 공범 범죄경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관계성, 즉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범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거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공범의 구조는 주로 네트워크화된 범죄조직의 형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9], 공범 중 일부가 검거 되더라도 나머지 공범 모두가 일망타진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잠재적 공범 범죄자들을 미연에 방지 및 억제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공범범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공범범죄에 대한 구조 및 특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이론에 적용시킴으로써, 공범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과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몇 가지 한계점도 작용한다. 첫째, 강도 및 절도 범죄에만 제한하여 공범범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외 다른 범죄에 적용하여 공범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극히 일부의 공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강·절도 공범범죄에 적용시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경우 이차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따르지 못함으로써, 자료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공범범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기대를 본다.

#### 참 고 문 헌

- [1] 강지현, “강·절도의 공범집단: 공범집단의 동질성과 범행지속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pp.1-24, 2014.
- [2] M. J. Hindelang, “The Social versus Solitary Nature of Delinquent Involvement,”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11, No.2, pp.167-175, 1971.
- [3] M. Erickson, “The Group Context of Delinquent Behavior,” Social Problems, Vol.19, No.1, pp.114-129, 1971.
- [4] A. J. Reiss and D. P. Farrington, “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Results fr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survey of London mal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82, No.2, pp.360-395, 1991.
- [5] K. P. Conway and J. A. McCord,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offending with Violent Accomplices and Violent Crime,” Aggressive Behavior, Vol.28, No.2, pp.97-108, 2002.
- [6] M. A. Anderson and M. Felson, “Co-offend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crime typ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56, pp.811-829, 2012.
- [7] S. B. van Mastrigt and D. P. Farrington, “Co-offending, age, gender and crime type: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49, pp.552-573, 2009.
- [8] C. Carrington, “Group crime in Canada,” Canadian Review of Criminology, Vol.44, No.3, pp.277-315, 2002.
- [9] 이민식,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pp.231-263, 2007.
- [10] 박지선, 김지영, “How Robberies Differ based on the Number of Offenders Involved,” 한국심리학회지:법, 제9권, 제1호, pp.21-40, 2018.
- [11] A. J. Reiss, “Co-Offending and criminal careers. In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DC: National Academy Press, 1986.
- [12] J. M. McGloin, C. J. Sullivan, A. R. Piquero, and S. Bacon, “Investigation the stability of co-offending and co-offenders among a sample of youthful offenders,” Criminology, Vol.46, No.1, pp.155-188, 2008.
- [13]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14] M. Warr, “Organization and instigation in delinquent groups,” Criminology, Vol.34, No.1, pp.11-37, 1996.
- [15] F. Weerman, “Co-offending as social exchange: Explaining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43, No.2, pp.398-416, 2003.
- [16] 김영은,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한 조직지원인식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제11권, 제3호, pp.45-64, 2011.
- [17] 마은경, 김명숙, “공공기관 내 구성원간의 지식 공유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7권, 제1호, pp.195-217, 2005.
- [18] B. A. Koons-Witt and P. J. Schram, “Does

Race Matte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Offending and Victim Characteristics for Violent Incidents Involving Female Offenders,” *Feminist Criminology*, Vol.1, No.2, pp.125-146, 2006.

- [19] 김지영, 박지선, 이나림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강도범죄의 특성,” *범죄수사학연구*, 제2권, 제2호, pp.25-49, 2016.
- [20] 박지선, 최낙범,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1권, pp.208-235, 2010.
- [21] B. H. McCarthy, J. Hagan, and L. E. Cohen, “Uncertainty, cooperation, and crime: Understanding the decision to co-offend,” *Social Forces*, Vol.77, pp.155-176, 1998.
- [22] 강지현, 김슬기, *공범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 [23] 이용민, 권오정, “근거이론에 기초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주거 계획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5권, 제1호 pp.149-169, 2015.
- [24] 문선아, 김봉근, 강진숙, “성폭력 범죄 보도 태도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제29권, 제6호 pp.37-66, 2015
- [25] J. Corbin and A. L. Strauss,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Vol.13, No.1, pp.3-21, 1990.
- [26] 오경희,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산림치유현상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2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0841&cid=42266&categoryId=56815>, 2018.10.03.
- [28]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B%B2%94>, 2018.9.26.
-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316&cid=40942&categoryId=31721>, 2018.9.26.

저 자 소 개

김 재 경(Jae Kyeo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석사)
- 2015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박사 수료)

<관심분야> : 범죄학, 청소년비행

이 선 범(Sun Beom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4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관심분야> : 재난안전, 경찰학, 범죄학